

신 탁 계 약 서 전 후 비 교 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② (삭 제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 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 1. 트러스톤 칭기스칸 플러스알파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2. 트러스톤 칭기스칸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3. 트러스톤 재형 칭기스칸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<u><신 설></u>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 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 1. 트러스톤 칭기스칸 플러스알파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2. 트러스톤 칭기스칸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3. 트러스톤 재형 칭기스칸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4. <u>트러스톤 룡솿 사모 증권자투자신탁 제7호[채권혼합]</u>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~ 2. (생 략) 3. <u>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(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. 이하 “어음”이라 한다)</u> 4.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----- 연계된 것(이하 “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”이라 한다) 5. 법 제110조에 의하여 ----- 집합투자증권(이하 “집합투자증권등”이라 한다) 6. 환매조건부 매도 7.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 여	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3.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----- 연계된 것(이하 “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”이라 한다) 4. 법 제110조에 의하여 ----- 집합투자증권(이하 “집합투자증권등”이라 한다) 5. 환매조건부 매도 6.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 여

8. 증권의 차입 9.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~③ (생략)	7. 증권의 차입 8.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~③ (현행과 같음)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~ 2. (생략) <u>3.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</u> 4.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하로 한다. 5.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 이하로 한다. 다만,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 6.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 7.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 8.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	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3.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하로 한다. 4.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 이하로 한다. 다만,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 5.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 6.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 7. <u>제1호 내지 제2호</u>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제18조 제1호 내지 <u>제3호</u>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<u>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</u>의 규	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제18조 제1호 내지 <u>제2호</u>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<u>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</u>의 규정

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<u>제18조 제4호 내지 제8호</u>, 제19조 제2호 내지 제8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1. ~5. (생략) ③(생략)	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<u>제18조 제3호 내지 제7호</u>, 제19조 제2호 내지 제8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1. ~5. 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
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</u>